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게 모범을!

- 2011년 깨끗한 총회 캠페인 -



1. 교회가 섬겨야 할 사회는 어떻게 선거하고 있나?
2.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교회는 어떻게 선거하고 있나?
3. 우리 교단은 왜 한기총을 탈퇴해야 하나?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교회2.0목회자운동 개혁교회네트워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도시공동체연구소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송사리교회개혁포럼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누리 학생신앙운동(SFC) 희년함께

1. 교회가 섬겨야 할 **사회**는 어떻게 **선거**하고 있나?

기준이 엄격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와 그들의 배우자는 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회는 이렇듯 공명선거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사·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밥 한 끼 먹는 것도 안 돼?

- ✕ 선거구내 거주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음식물, 돈, 물품 등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것
- ✕ 결혼식, 장례금 등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내는 것
- ✕ 동창회,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 화환, 기념품, 음료수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것
- ✕ 명절을 핑계로 선물세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것
- ✕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주는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 받는 사람도 최대 50배 과태료

- ✓ 선거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 ✓ 당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
- ✓ 징역형이 집행 또는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공무담임 제한
-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된 이후 5년 동안 공무담임 제한
- ✓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공명선거, 다함께 만들어요!



불법기부행위는 부정선거입니다!



정책선거, 공명선거의 출발입니다



선거법 안내·신고

2.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교회**는 어떻게 **선거**하고 있나?

공명선거운동, 개신교가 앞장섰는데...

사회가 처음부터 엄격한 선거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비교적 공명정대한 선거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거위) 활동 등 개신교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의? 관행? 인사치레? 선거규정은 있으나 마나

각 교단도 나름의 선거규정을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예의, 관행, 인사치레 등을 이유로 식사비, 교통비 등을 공공연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액수는 상식 밖입니다.

“노회와 지방회, 그리고 총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세상 정치구조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금권 타락선거와 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지위에 지나치게 연연하며 교권을 남용하여 이득을 꾀한 불의와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06년 6월 26일(월) 한국교회 대부흥 백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소속 15개 교단 목회자 일동이 드리는 참회고백〉 중에서

교단헌법에는 처벌조항이 없거나 미흡

사회법이 불법선거를 했을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단선거 처벌규정은 후보자격 취소 및 향후 몇 년간 후보등록 금지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각 교단은 불법선거를 어느 정도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고신과 합동은 당선무효, 후보취소, 자격제한에 그치고, 통합은 아예 처벌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형편입니다.

< 각 교단별 총회규칙, 선거조례, 시행세칙 등에 나타난 불법선거 및 처벌 조항 비교 >

	불법선거금지 관련											처벌 관련				
	금품 수수	접대 행위	기부 행위	상대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광고 기고	집단 지지	후원회 결성	회유 압력	강사 초청	강사 출강	당선 무효	후보 취소	후보 제한	처벌 유무
고신	○	○	○	○	○	○	○	○	○	○	○	○	○	○	○	X
통합	○	○	○	○	○	○	○	○	X	X	○	○	X	X	X	X
합동	○	X	X	X	X	X	X	X	X	○	X	X	X	○	○	X

(관련조항이 있을 경우 = ○ / 없을 경우 = X)

3. 우리 교단은 왜 **한기총**을 **탈퇴**해야 하나?

추태의 정점을 찍은 한기총 사태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를 통해 보여준 추태의 정점은 바로 올해 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사태였습니다. 대표회장 당선자가 보통 시민이 일생동안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을 돌렸습니다. 그 사실을 폭로한 직전회장은 돈 봉투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시켜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대표회장도 구체적 액수까지 밝힌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해서 당선됐습니다. 결국 법정싸움과 변호사가 직무대행이 되는 소동 끝에 갑작스런 화해로 금품을 돌린 당선자는 특별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인준 받았습니다.

< 한기총 해체 및 탈퇴를 위한 각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의 노력 >



미래교회포럼(고신) 한기총 해체 기도회



한기총 탈퇴를 위한 예장(통합)대책위



한기총 해체 목회자·평신도 100인 선언

한기총 탈퇴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한기총이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십당오락(十當五落 ; 10억을 내면 되고, 5억을 내면 떨어진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금품이 오고간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한기총에 참여한 교단으로서의 책임감보다 '세상 속의 교회'로서의 사명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은 한기총을 탈퇴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아직 자정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 각 교단별 한기총 탈퇴 현의 현황 >

고신	탈퇴(5) 경북, 남서울, 마산, 수도권, 전남동 기타(1) 서부산(개혁 요구)
통합	탈퇴(7) 강원, 경북, 경안, 대구동남, 대구서남, 대전서, 부천 기타(5) 강원동(결의문 채택), 광주(참여 및 협력 보류), 서울(책임 있는 대책 마련), 서울동(행정 유보), 포항(행정 및 재정지원 보류)
합신	탈퇴(2) 경기북, 충청